

제299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2018년 10월 16일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‘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’가 신설되었습니다.

위 신설 내용에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.

이 개정에 따라서, 이번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기존에 정의했던 ‘예술인’ 외에도 ‘취약예술계층’의 정의를 규정합니다.

이 외에도 ‘취약예술계층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술 산업의 육성하고자 합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